

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4. 1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구립모래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6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립모래말데이케어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대상시설

시설명(가칭)	위 치	규 모	정원
구립 모래말데이케어센터	도림로 41 (도림동 205-23) <모래말어르신복지센터 5,6층>	232.62㎡ (70평)	21명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운영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원금(85%)과 이용자 본인부담금(15%)으로 운영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가칭)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는 영등포구 도영로 41(도림동 205-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32.62㎡(70평),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로써
-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자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3,299명으로 영등포구 인구 전체의 14.5%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또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노인요양등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2017.12월 기준 우리구 거주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등급자는 3,290명으로 이 중 2,684명인 81.5%만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아직도 6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 재가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우리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은 총 11개소로 구립 8개소, 사설 3개소이며 이 중 2개 구립시설은 2018. 4. 1.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음.
-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는 노후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가복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 장기요양 수요·공급 현황(2017.12월 기준)

- 어르신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20년 (주계)	2025년 (주계)	2030년 (주계)
전체인구	426,876	421,436	406,779	368,550	383,869	375,013	366,958
노인인구 (인구대비%)	45,417 (10.6%)	49,184 (11.6%)	51,186 (12.5%)	53,299 (14.5%)	60,533 (15.7%)	75,113 (20.0%)	88,645 (24.1%)

- 장기요양 등급 현황

(단위 : 명)

등급판정 신청자	등급 인정자						등급위 A,B,C	판정 탈락자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4,348	3,290	371	469	1,102	1,066	282	195	863

- 급여 이용자

(단위 : 명)

노인인구수	요양등급자	시설별 이용자수			미이용자	비고 (이용률)
		합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53,299	3,290	2,684	363	2,321	606	81.5%

- 재가 요양서비스 공급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수	173	11	98	65	2
이용인원	2,306	308	1,763	201	34
시설정원		282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2018.4월 기준)

연번	시설명	주소	운영 법인	정원	개관일	비고
1	구림영등포노인복지센터 (영등포데이케어센터)	선유서로34길10,3층 (양평동3가) (양평1동3가36)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	30	'95.2.20	구립
2	구림엘림데이케어센터	도영로41(도림동 205-23) 5층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21	'10.2.26	구립
3	구림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병설데이케어센터	도림로482(문래동3가) (문래동3가76-2)	학교법인 일송학원	35	'08.9.29	구립
4	구림당산데이케어센터	국회대로28길17(당 산동3가) (당산동3가395-25)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1	'10.10.1 8	구립
5	구림여의도원광 데이케어센터	여의대방로68길15,3층 (여의도동,영창빌딩) (여의도동554-6)	재단법인 원불교	28	'11.2.7.	구립
6	우리집데이케어센터	디지털로398,3층 (대림동,대성빌딩) (대림1동864-32)	개인	18	08.8.25	사립
7	구림영등포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	당산로29길 9, 5 층(당산동3가 407)	사회복지법인 윤혜복지재단	28	'15.5.6.	구립
8	신길데이케어센터	도림로323,203,205 호(신길동,권영상가) (신길3동364)	개인	25	'17.5.16	사립
9	에녹요양협동조합 주야간보호센터	가마산로 313, 3층	에녹요양 협동조합	34	'18.3.26	사립
10	구림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영등포구도림로80길6 (신길5동341-3)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1	'18.4.1	구립
11	구림대림1동 데이케어센터	영등포구디지털로 441 (대림1동899-2)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1	'18.4.1	구립

관 련 법 령

1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3.12.12>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위탁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